

##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

-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어 관련자 문책요구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엄중 경고
- 팩트체크 플랫폼 재가동, 복수의 기관 선정과 공신력 있는 기관 평가 등 공정성 제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 이하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작년 9월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의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특히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두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 Ⅰ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재단은 '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붙임 7쪽 참고)

또한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1·'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붙임 9쪽 참고)

이에 대하여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그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요구하고, 보조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Ⅱ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재단은 '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단이나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붙임 10~11쪽 참고)

이에 대하여 '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21년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요구하는 한편,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다.

### Ⅲ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관련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정당 인건비 1억 8천만 여원보다 1억 5천만여원 과다한 3억 4천만여원을 지급하였다.(붙임 13~14쪽 참고)

※ (사례) '21. 12월 개발책임자 김○○의 경우 실제 월 급여는 530만 원인데도 IT 기획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기준 급여를 920만 원으로 산출

또한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크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하고(붙임 13쪽 참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되었다.(붙임 15쪽 참고)

이에 대하여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 결정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요구하고,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였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요청하였다.

#### 4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등 해소 대책 관련

국회는 '20년과 '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게시물의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팩트체크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보고하였다.

\* (전문팩트체커 참여사)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

그러나 운영자문위원회를 '21년에 1회만 개최하고, '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등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붙임 8쪽 참고)

#### 5 향후 팩트체크 사업 개선 방향

감사결과 확인된 팩트체크 사업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결과 요약 1부. 끝.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감사담당관	유석균 (02-2110-1601)
		담당자	부감사관	이진은 (02-2110-1603)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책임자	과장	김우석 (02-2110-1560)
		담당자	사무관	손건우 (02-2110-1538)



## 붙임

##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결과 요약

### 1. 감사 개요

#### □ 감사배경

- 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한 지 3년이 경과(직전 감사 '20. 6월)하였고,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및 '23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재단 주요사업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 주요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조직·인사·복리후생 등 기관운영의 적정성을 점검
- 주요 사업 중에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편향성 지적이 있었고, 감사 실시일 현재 간접보조사업자의 해산으로 사업 일부의 추진이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을 중점 감사

#### □ 감사범위, 기간 및 인원

- (감사범위) '20년부터 '23. 8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
- (기 간) '23. 9. 11.~12. 1., 총 44일
- (인 원) 감사담당관 등 9명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명)

구분	문책	경고	주의	통보	계
재단	2(2)	4(5)	11	1	18(7)
방통위	-	2(3)	3	3	8(3)
계	2(2)	6(8)	14	4	26(10)

※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목적 외 사용” 건 관련자 2명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요청

※ 문책요구 대상자는 총 2명으로, 각 대상자가 관련된 4·6번 문제점과 1·4·7번 문제점을 각각 병합하여 대상자별로 1건(총 2건)으로 처리

## 2. 시청자미디어재단 현황

### ① 설치 목적 및 연혁

- (설치 근거) 「방송법」 제90조의2
- (설치 목적) 미디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및 권익증진, 장애인의 방송시청 및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등
- (연혁) '15. 5월 재단 출범, '16. 2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23.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 변경

### ② 조직 현황

- 이사장 1인과 비상임 이사 및 감사 7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하부 조직으로 2본부 7부 2팀 10센터를 두고 있음
- 정원은 279명 중 임원 1명, 일반직 189명, 무기계약직 89명

### ③ 예산 현황

- 2023년 예산 : 총 535억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년 예산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수입	정부보조금	35,156	35,894	42,923	43,411
	지자체 분담금	3,594	4,030	4,125	4,397
	기타협약사업	1,312	1,718	1,390	827
	기부금 등	235	216	137	36
	전기 이월	2,842	286	1,764	4,829
	계	43,139	42,144	50,339	53,500
지출	인건비	12,452	13,526	14,184	14,773
	운영경비	5,509	6,159	6,415	6,711
	사업비	25,178	22,459	29,740	32,016
	계	43,139	42,144	50,339	53,500

## 3. 팩트체크 사업 현황

### ① 사업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방통위는 '20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팩트체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 추진
- (사업 내용)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

### ② 사업 추진 방식

- 방통위는 '20년부터 '23년까지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재단은 '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 일부[예산 총 5,040백만 원 중 1,854백만 원(37%)]를 민간단체에 위탁·수행

### ③ 예산 현황 및 사업 실적

- (예산 현황) '20년 560백만 원, '21년 2,740백만 원, '22년 1,740백만 원, '23년 610백만 원, 총 5,650백만 원
- (사업 실적) 팩트체크 플랫폼은 '20.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2년까지 54만여 명이 이용하였고, 팩트체크 결과물은 '22년까지 총 348건 생산
- 팩트체커 양성 교육은 총 38회(총 500명 이수),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은 총 164회(총 2,959명 이수) 실시
- 그밖에 이러닝 콘텐츠 운영, 대학 내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교육 콘텐츠 제작 등

▪ 팩트체크 플랫폼: 인터넷 환경에서 생산·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해 팩트체크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및 하부 시스템

## 4.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 □ 팩트체크 사업 분야

#### 가. 보조사업자 등 선정

##### 1)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부당 지정 [문책, 경고]

- 재단은 '21. 1월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5억원)의 간접보조사업자로 **개개**를 선정, 방통위의 승인을 받음
-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 제30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은 2. 5. 방통위에 사업수행주체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와 '플랫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 일반경쟁 등 절차 없이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3억원)을 **개개**가 수행하는 것으로 **임의로 지정**하여 사업수행 협약 체결, 2. 9. **개개**에 1차 간접보조금 1억 2천만 원 교부
- 그 후 재단은 방통위에 사업수행주체 변경 승인을 사후 요청하였는데,
  - 방통위는 재단이 **개개**에게 임의로 지급한 간접보조금 교부 취소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에 재단이 방통위 승인 없이 간접보조사업자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데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b>관련자 경고</b></li> <li>■ 재단에 방통위 승인 없이 간접보조사업자를 부당하게 지정하고 간접보조금 교부 등을 한 <b>관련자 문책요구</b></li> </ul>
-------	--

##### 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행관리 부적정 [주의]

-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개개**는 방송사·신문사에 전문팩트체커 참여를 요청, 9개 언론사를 모집
- 한편, '20·'21년 국정감사 시 **국회(과방위)**는 재단에 참여언론의 구성 등 외부 논란과 관련하여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정 및 처리 요구를 2차례에 걸쳐 하였는데
  - 이에 대해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게시물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으로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대책을 보고**
- 그러나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21년 **1회만 개최**하였고, '22년에는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도 회의**를 미개최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 국회의 요구에 따른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노력 미흡**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에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등 국회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b>주의요구</b></li> </ul>
-------	---

##### 3) 보조사업자 등 공모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주의]

#### ① 내역사업 공모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 따르면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 보조금 교부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로 규정**
  - 따라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집행 단위인 **내역사업별로 공모**를 하여야 함

- 그런데 **방통위**는 '20. 1월 팩트체크 사업의 수행기관(보조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내역사업이 아닌** 다수의 내역사업이 합쳐진 “**세부사업 단위로 공모하며, 내역사업별\* 공모 신청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고

\*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3억 3천만원), 팩트체크 인큐베이팅 기반마련(1억 5천만원), 팩트체크 인력양성(1억 3천만원)

- 그 결과 수행 단위, 성격 등이 다른 내역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기관이 검토되지 않고 재단이 팩트체크 사업의 단일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 재단도 같은 해 3월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팩트체크 사업 일부에 대해 위탁사업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소관 **내역사업 전체에 대해 공모를 하여 [KK]를 단일 수행기관으로 선정**

## ② 공모 심사 부적정

- 재단의 '20년 팩트체크 사업 간접보조사업자 공모에 따르면 신청 시 사업수행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
- 그런데 재단은 단일 신청자인 [KK]가 사업수행계획서상 **필수 항목을 누락\***하였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고
- \*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취득 계획,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4개 요구항목
- '21·'22년 전문교육 지원 등 5개 위탁사업 공모에서도 [KK]가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미제출**하였는데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 앞으로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시 내역사업별로 공모하도록 <b>주의요구</b></li> <li>■ 재단에 간접보조사업 공모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한데도 이를 그대로 접수·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b>주의요구</b></li> </ul>
-------	--

## 나. 보조사업 수행

### 4) 팩트체크 플랫폼 및 모바일 앱 소유권 부당 이전 [문책, 경고]

- 방통위는 재단, [KK] 등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팩트체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 결과물로 팩트체크 플랫폼\* 및 모바일 앱** 등을 구축

\* 인터넷 환경에서 생산·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해 팩트체크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및 허부 시스템**

### ① '20년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 부당 이전

- 방통위는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공고**
- 「예산안 편성 등 세부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민간의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으로 **자산 취득 지원 등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 방통위는 매년 팩트체크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추진
- 따라서, 당초 공고 내용과 달리 사업의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 등의 **자산을 (간접)보조사업자가 소유하도록 할 때에는** 소유권에 관한 당초 공고 내용, 관련 법률자문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 **자본적 경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조정을 위한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함**
- 그런데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재단은 간접보조사업자인 [KK]가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 재단은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사업 수행기관에 있으나 **소유권은 이와 별개**'라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당초 공고 내용과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이 [KK]에 귀속하는 것으로 변경**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 이 과정에서 재단 담당부서는 플랫폼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방통위 공고 및 법률자문 내용을 이사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플랫폼의 소유권이 [가]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
- 방통위도 위 협약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당초 방통위 공고 및 재단의 법률자문 내용을 방통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 보조사업자가 사업 결과물 등 자산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기재부와의 예산 조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

## ㉒ '21년 팩트체크 모바일 앱 소유권 부당 이전

- 재단은 '21년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공모 시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 것으로 공고
- 그런데 재단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선정 후, 당초 공고 내용과 달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제3자인 [가]에 있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 이 과정에서 재단 담당부서는 소관 본부장 등에게 당초 재단 공고 및 법률자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 '20년 팩트체크 플랫폼 소유권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앱에 대한 소유권이 [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
- ※ [가]가 '23. 2월 해산하여 팩트체크 플랫폼 등도 같이 폐쇄되었는데, 소유권 이전 문제로 '23. 12월 현재까지 플랫폼 운영 사업이 중단된 실정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재단 관련자 및 방통위 관련자 경고</li> <li>■ 모바일 앱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재단 관련자 문책 요구, 재단 기관장 경고</li> </ul>
-------	--

## 5)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부적정 [주의, 통보]

- 재단은 '20~'22년 간접보조사업을 통해 팩트체크 플랫폼을 개발하는 외에,
- 재단의 직접 발주 용역사업으로 AI 기반 팩트체크, 실시간 이슈분석, 공인 발언 분석 등 3개 시스템을 추가 구축(총 9억 34백만 원)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현황

수행기관	기간	사업	내용	집행액
-	'20~'21	AI 기반 팩트체크	위키피디아 데이터세트 8만 건 구축 등	5억 25백만 원
-	'20~'22	실시간 이슈 분석	뉴스, 블로그 등의 실시간 이슈 발굴	3억 8백만 원
-	'21~'22	공인 발언 분석	온라인 상 주요 공인의 발언이슈 수집	1억 1백만 원

- 위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위 3개 시스템은 관련 연구자, 사업자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공개하여야 함
- 그런데 재단은 이를 팩트체크 플랫폼의 하위시스템으로 탑재하여 전문팩트체커 등 팩트체크 사업 관련자 외에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 '23. 1월 팩트체크 플랫폼의 운영자인 [가]가 해산함에 따라 위 플랫폼이 폐쇄되자 위 3개 시스템도 같이 폐쇄되는 결과 초래
- 방통위는 재단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통해 위 3개 시스템이 팩트체크 플랫폼에 탑재되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시스템별 별도 웹사이트 구축 등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 위 3개 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li> <li>■ 재단에 공개 운영해야 할 시스템을 특정 단체 소유의 시스템에 탑재하여 일반인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li> </ul>
-------	--

**6)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문책, 주의]**

- 「보조금법」 제22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 배분 등 변경 시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재단은 간접보조사업자인 [가]가 팩트체커 교육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반 예산 3천만 원을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자 방통위 승인 없이 임의 승인하고,
  - '21년 팩트체크 역량 강화 사업의 교육만족도조사용 일반용역비 예산 1천만 원을 방통위 승인 없이 재단 본사 사무실 확장 공사비로 임의 집행
- 방통위는 재단으로부터 위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정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 재단의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li> <li>■ 재단에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승인한 관련자 문책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li> </ul>
-------	---

**7)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문책, 경고, 통보, 수사요청]**

- 재단은 [가]를 '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및 '모바일앱 개발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인건비(19명)로 3억 5천만 원 교부
- 「보조금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는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집행해야 함
- 그런데 [가]는 위 2개 사업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높은 SW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과다 산출하여 재단에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고

- 재단은 [가]가 산정한 인건비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고 이사장 결재를 거쳐 간접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 정당 인건비는 1억 89백만 원인데도 3억 49백만 원을 집행하여 총 1억 59백만 원을 인건비 외 목적으로 사용
- 방통위는 재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건비가 과다 산출·집행된 정산 보고를 받고도 적정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 재단의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및 환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li> <li>■ 재단에 과다하게 산정된 간접보조금을 교부결정한 관련자 문책요구, 재단 기관장 경고</li> <li>■ 보조금법 위반(목적 외 사용) 관련 수사요청</li> </ul>
-------	--

**8) 팩트체크 플랫폼 개발 등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르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22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가]는 과업이 유사한 용역계약 2건을 각각 2천만 원 이하로 분리하여 수의계약하고
  - 계약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계약 (39백만 원) 1건\*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에 간접보조사업자가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계약 체결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li> </ul>
-------	---

## 다. 보조사업 사업비 정산 및 성과 관리

### 9)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주의, 통보]

- 재단은 매년 「보조금법」에 따라 **개편** 등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용한 보조금을 재단이 직접 집행한 보조금과 함께 방통위에 정산보고
- 그런데 방통위와 재단은 '20~'22년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거나 실제 집행 사실과 다르게 정산 보고 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

- '20년 **개편**은 '20. 10월 공모전 평가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차비용**을 사전 결제한 후 실제 주차를 하지 않는 등으로 주차료 86만여 원 **과다 정산보고**
- '21년 **개편**은 팩트체크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도서 23권을 구매하는 데 40만여 원 집행 후 정산보고
- '21년 **개편**은 수행 사업의 기간이 12월까지인데도 **구독기간이 '24. 8월까지**인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여 47만여 원 **과다 정산보고**
- '22년 **개편**은 30분 내외의 강의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용역계약(2건)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9분~19분에 불과한 영상 6건을** 납품받고도 계약금 15백만 여원 그대로 지급 등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 재단의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b>통보</b></li> <li>■ 재단에 간접보조사업자의 간접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b>주의요구</b></li> </ul>
-------	--

### 10) 팩트체크 결과물 성과 측정 부적정 [주의]

- 재단은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매년 팩트체크 사업 종료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방통위에 보고

- 그런데 재단은 팩트체크 사업의 성과 지표로 '팩트체크 결과물(건)'을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하면서
- '20년과 '22년에 팩트체커의 팩트체크 건수에 일반인 공모작, 교육생 실습작까지 포함시켜 성과를 **과다 산정**하고, 방통위에 보고

- ('20년) 19건: 팩트체커의 팩트체크 결과 15건 + 일반인 공모작 4건
- ('22년) 195건: 팩트체커의 팩트체크 결과 117건 + 일반인 공모작 19건 + 연습생 실습작 59건

- 방통위도 재단이 매년 보고한 팩트체크 사업성과 산정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 그 결과 사업의 성과관리가 부실해지고, 성과 측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 재단에서 제출한 팩트체크 결과물 성과에 대한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b>주의요구</b></li> <li>■ 재단에 팩트체크 사업의 성과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b>주의요구</b></li> </ul>
-------	---

## □ 기관운영 분야

### 11) 기간제계약직 채용 지원자 경력 인정 부적정 [경고]

- 재단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창업지원 5급 상당의 기간제계약직은 학사학위 취득 후 창업지원 분야에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
- 그런데 재단은 前 직장 경력(3년 3개월)이 채용분야와 무관하고, 제출된 증빙서류로는 실제 근무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기간제계약직 1명을 채용('21. 12월 퇴직)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에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b>관련자 경고</b></li> </ul>
-------	---



**12) 과도한 복리후생 등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통보]**

- 재단은 창립기념일 등을 무급휴일로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함으로써, '20·'23년 총 56백만여 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 직원의 후생복지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하는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달리 각 부서에서 연간 약 30회에 걸쳐 평일 근무시간에 실내체육행사 등 후생복지활동 실시
- 그리고 세대분리에 대한 가족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20년~'23. 8월 가족수당 미지급 대상 5명에 대해 가족수당 279만 원을 지급

<b>조치 사항</b>	<p>■ 재단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b>주의요구</b>, 과다하게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b>통보</b></p>
--------------	--

**13)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 재단의 「계약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은 '20~'23년 '실감형 미디어교육 콘텐츠 제작'(64백만 원) 등 30개 용역(총 12억 52백만 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 계약업체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까지 함께 메일로 제출받는 등 형식적으로 비교견적 수행

<b>조치 사항</b>	<p>■ 재단에 앞으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b>주의요구</b></p>
--------------	--

**14)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활동비 지원 부적정 [주의]**

- 재단은 '22년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계획에 따라 지역센터별 10편(총 100편)에 대한 콘텐츠 제작활동비를 지원하면서
- 당초 기획안에 따라 반드시 작품 완성, 콘텐츠 제작불가 시 추가 모집 등 진행, 최종심사를 거쳐 제작활동비 지급 등의 준수사항을 공지
- 그런데 점검 결과, 제작된 콘텐츠 중 총 11편이 공지사항이 준수되지 않았는데도 제작활동비 7백만여 원을 그대로 지급

• 당초 기획안과 다른 작품 7편, 추가모집 생략 2편, 최종심사 생략 2편

<b>조치 사항</b>	<p>■ 재단에 앞으로 사업 관련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제작 활동비 등 사업비를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b>주의요구</b></p>
--------------	--